

2024학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5. 4. 2. ~ 4. 1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호남권역재활병원

2025. 5. 13.



학교
법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4학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1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3
2. 조선대학교	4
3. 조선대학교병원	12
4. 조선대학교치과병원	19
5. 호남권역재활병원	23
6. 조선이공대학교	24
7. 조선간호대학교	29

2024학년도 결산감사 보고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 사 회 귀 중

2025년 5월 13일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와 우리법인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4월 2일 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및 설치학교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 권역재활병원의 재산상황,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의 회계는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이나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각급기관은 따로 붙임 지적된 사항 외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고, 업무수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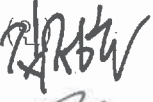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현필



2024학년도 결산감사 결과보고서

(2025. 5. 13.)

기관명: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정 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 현 필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1	퇴직자의 임금지급 지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자의 임금 등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조선대학교는 퇴직자 수당 등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 지급 및 기타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퇴직 등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그 지급의무가 명확한 채무는 재무상태표에 기록, 명시(미지급금 등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2	출장여비 등 차기회계 반영 부적절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결산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대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하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등에 따라 확정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조선대학교 회계연도 초 출장비 성격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여비교통비, 기타학생복지비 및 입시경비 등의 계정과목에서 당해회계연도에 반영되어야 할 지출 건들이 차기회계에 반영, 처리된 사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조직이 크고 단과대학 및 부속기구 등이 매우 많아, 이를 관리·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그 원인행위가 본부부서에서 발생한 사례도 다수인 점을 볼 때, 다수의 교직원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관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특성상 많은 부서에서 지출 원인행위와 품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지출 건들을 확인,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조선대학교는 교직원들에게 상기 주의사항 등을 공지 및 안내하고, 보다 세심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3	계정과목 처리 부적정 관련 1) ‘소모품비’ 계정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라, 복사용지·프린트용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한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부터는 계정과목 별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선대학교는 각종 협의회비 및 연회비 등의 지출에 있어 해당 비용의 성격에 부합하는 계정과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한 계정과목으로 분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 성격의 지출이 여러 계정으로 나뉘어 처리될 경우, 회계 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각종 협의회비 등은 ‘각종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사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관련 지출의 회계 처리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4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구분 부적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성 경비인 '건축물관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요구 단계에서부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 분류하고 안내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5	등록금 반환 프로세스 개선 조선대학교는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시,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실부담 금액에 대해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지급  금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공유 및 시스템 연동이 미비하여 이와 같은 이중 반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무팀과 장학팀은 등록금 반환 전 장학금 수혜 정보 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장학 및 등록 관련 프로그램 간 연계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국가유형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대출이 상환 처리되고 장학금으로 간주되는 유형으로, 장학팀은 이를 국가유형 (재단대출상환)이라는 별도 구분 코드로 관리해오고 있음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6	현물 기증 추진 절차 부적절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화백(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퇴직 명예교수)과 상호협약하여 조선대학교에 미술품 기증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시행(미술체육대학-1133, 2024.3.28.)하였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추진 내용</th><th>예산액(원)</th></tr> </thead> <tbody> <tr> <td>아카이브</td><td>기획, 감수, 입력/정리, 작업 보조, 사진촬영, 기타 업무추진비 등</td><td>10,000,000</td></tr> <tr> <td>전시</td><td>작품 포장/운송, 기획/설명문 작성, 도록 제작, 홍보물 제작, 오픈식 행사 등</td><td>10,000,000</td></tr> <tr> <td colspan="2">계</td><td>20,000,000</td></tr> </tbody> </table> 아카이브작업을 수행할 인력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차 (2024.4.8.~5.9.) 및 2차 (2024.5.18.~6.24.)에 걸쳐 작업을 완료하여 총 9,2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관련 회의경비 81,000원 별도), 불상의 사유로 차후 일정(전시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작품의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2024학년도 잔여예산 감액, 2025학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됨), 감사 기간 중, 미술체육대학으로부터 이에 대한 소명서를 징구하여 화백의 건강문제 등으로 중단된 상황과 사업 재추진 의지(가족과 의논 중)를 확인하였습니다. 교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작품의 기증이 관련 교비의 집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이전에 협약식 또는 서약서 등을 받도록 하고, 기증 작품의 선정(혹은 기증 작품 수 결정) 등도 선행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었어야 하는 바, 조선대학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교비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구 분	추진 내용	예산액(원)	아카이브	기획, 감수, 입력/정리, 작업 보조, 사진촬영, 기타 업무추진비 등	10,000,000	전시	작품 포장/운송, 기획/설명문 작성, 도록 제작, 홍보물 제작, 오픈식 행사 등	10,000,000	계		20,000,000	○ 개선 권고
구 분	추진 내용	예산액(원)												
아카이브	기획, 감수, 입력/정리, 작업 보조, 사진촬영, 기타 업무추진비 등	10,000,000												
전시	작품 포장/운송, 기획/설명문 작성, 도록 제작, 홍보물 제작, 오픈식 행사 등	10,000,000												
계		20,000,000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7	‘장미원 장미 갱신 및 보식 공사’ 관련 미식재 비용 환수 조치 및 담당자 경고 조선대학교에서는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미원 장미 갱신  2024년 결산감사 기간 중 과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도면과 준공계에서 제출된 내역, 담당자가 제출한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건축안전환경팀 담당자 입회하에 실제 장미원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로셀리나 59주가 식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1,153,000원에 기타 정산비용(간접 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부가세 등 차액 약 324,972원 추정)을 포함}에 대한 비용을 업체로부터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집행 후 장미원 관련하여 2024학년도에 아래와 같은 계약이 진행된 바 있어 조선대학교에서는 그 납품 및 이행완료 확인에 있어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주시고, 2025학년도 현재에도 아래와 같은 계약이 진행중이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결의번호</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본 건</td><td>20240311-032</td><td>장미원 갱신 및 보식공사 준공금 지급</td></tr> </tbody> </table>		결의번호	내용	본 건	20240311-032	장미원 갱신 및 보식공사 준공금 지급	 비용 환수 조치
	결의번호	내용						
본 건	20240311-032	장미원 갱신 및 보식공사 준공금 지급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대 금 지 급 완 료	20240403-051	장미원 관리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20240408-061	장미원 관리에 따른 물품 구입비 지급
	20240416-060	장미원 내 화강판석 보수 작업비 지급
	20240425-070	장미원 종합안내도 외 보수 준공금 지급
	20240502-064	장미원 관리에 따른 농약 구입비 지급
	20240509-046	장미원 휴게실 외벽 보완공사 대금 지급
	20240509-062	장미원 분수대 배관 및 보조키 보수 작업비 지급
	20240518-002	장미원 내 조명 보수 대금 지급
	20241126-044	장미원 장미 보식공사 준공금 지급
	20250217-115	장미원 넘어짐 방지용 인조잔디를 구입비 지급
	20250218-116	"교내 장미(장미원 및 기타 5개소) 유지관리 용역" 용역 완료 대금 지급
	20250218-125	건축안전환경팀 "2025년도 장미원 유지관리 농약 구입" 물품 구매 대금 지급
	20250219-017	장미타워 보수 및 출입문 도장 작업금 지급
	20250224-018	장미원 부산물 적치공간 및 진입로 개설 작업비 지급
	20250409-007	장미원 장미표찰 구입비 지급
진행중	교내 장미(장미원 및 기타 5개소) 유지관리 용역	
	교내 장미 화단 조성 공사 입찰 (정문, 로셀리나 275주 등)	
	장미원 시설물 보수 공사 견적	
	장미원 조명기구 교체 공사	

아울러 공사, 용역의 경우 감사기간 중 현장조사로 점검하는 것은 범위와 시간에 한계가 있어, 총무관리처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준공계를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여, 외부 감사가 확인할 때에 문서와 사진대장 등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특히 물량의 확인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 수준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